

'메르스'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

□ 지원대상 : 메르스 피해자 (확진자·격리자, 휴업 병·의원 등)

□ 지원기준

1] 기한연장

- (요건) 천재지변, 사변, 화재, 도난, 사업상 중대한 위기, 재해,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사망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
 -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(내용)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등을 연장 조치 가능
 -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연장
 - ※ 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 및 「시행령」 제5조·제6조 (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)

2] 징수유예 등

- (요건) 풍수해·벼락·화재·전쟁·도난·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,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
 -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- (내용)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
 - ※ 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 및 「시행령」 제67조(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)

3]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

- (요건)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시행 가능
- (내용)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,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
 - ※ 근거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